

# 순천대학교발전연구팀운영규정

제정 2001. 3. 29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총장의 자문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순천대학교발전연구팀(이하 “발전팀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발전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연구
2. 대학 중·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학사제도 개선 연구
3. 각종 대학평가 업무 지원
4. 기타 대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발전팀은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이 대학교 교원과 교무과장 및 기획담당관으로 구성한다.

②발전팀에 팀장 1인을 두며, 팀장은 팀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발전팀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팀원 중에서 팀장이 지명한다.

**제4조(임기)** 발전팀장과 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팀장 등의 직무)** ①팀장은 발전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발전팀을 대표한다.

②팀원은 팀장의 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.

③간사는 팀장을 보좌하고 발전팀의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6조(업무 지원)** ①팀장은 발전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사무환경 및 인력지원 등을 관련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②발전팀에게 정책과제 연구 또는 기타 사업추진을 의뢰할 때는 연구비 또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총장은 발전팀장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 제13조제2항의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.

**제7조(재정)** 발전팀의 재정은 정책과제 수행 또는 기타 사업추진에 지원되는 연구비 또는 사업비로 충당한다.

**제8조(보 칙)** 발전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## 부 칙 (2001. 3. 29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명된 발전팀장 및 팀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